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회계 · 계약 운영 관련

1. 물품매각 계약 파기에 따른 질의

【질 의】

○ 우리구에서 2005.4.11일 불용품을 공개입찰하여 매각하였습니다. 물품 예정가액이 37만원이었으나, 285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업자간의 마찰로 인해 입찰가격 급증)물품중 음식물쓰레기 발효건조기기 4대가 속해 있어 입찰등록인만도 14명이나 되었습니다.

○ 입찰이 끝난 후 낙찰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대금을 완납후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공고상 목록에는 4대라고 했으나, 낙찰인은 담당자가 5대라고 했다며 계약 해지 후 물품을 재 반납, 물품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물품대금 까지 완납받은 후 계약을 해지하여 대금을 반환하여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 경우 위 원칙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된 계약이라면 계약의 해지 ·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신설업체의 경영상태평가에 대한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05.02.03.) 별표 3) 경영상태평가방법 중에서 Ⅱ. 5항 직전회계년도(2003년) 이후 회계연도(2004년)에 새로 설립된 신설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추정가격 3억미만으로 업종등록시 제출된 기업진단보고서를 평가할려고 하는데,

○현재 협회에서 공고된 평균비율은 2003년의 비율이고 신설업체의 진단보고 내용은 2004년일 때, 건설업계 평균비율을 그냥 2003년의 비율로 평가해도 무관할련지 궁금합니다.

【회 신】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61호) 〈별표 3〉경영상태평가방법 중에서 Ⅱ→5호의 규정에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단,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하며, 당해공사 추정가격

이 3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함"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업체가 2004년도 신설된 업체라면 현재 2004년도 업계 평균재무비율이 공포되지 않은 바, 2004년도 최초결산서(기업진단보고서)로 재무상태를 평가하며 이 경우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법인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발급된 기업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제한경쟁계약에 대한 질의

【질 의】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는 용역입찰 경우 5억원이하인데 이는 내무부령이라서 행정자치부령으로 발표된 것이 있는지?

○ 행정자치부예규 제68호 제한경쟁입찰한도액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입찰한도액이 되는데 추정가격이라 함은 얼마입니까?

○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04. 8. 20일은 아직 법령공포가 안된건지?

【회 신】

질의 1 · 3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 278호)」이 2005. 4. 13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일반용역의 지역제한 한도금액은 시 · 도(울산광역시 제외)의 경우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시 · 군 · 구의 경우 추정가격 5억원(기술용역은 2.1억원 미만, 안전진단용역은 1.5억원) 이하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1호의 규정에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 · 공사 ·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가격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과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을 의미합니다.

4.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범위 질의

【질 의】

○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내용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건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국계법시행령 제26조1항6호나목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착수계를 접수받았으나 구비서류를 검토한바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완을 하여 주지 않고 있어 사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바, 이에 대하여

1. 기술용역 일반조건 제29조1항1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2. 계약해지시 미이행 업체(조합, 사업배정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1항6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제재의 범위(조합, 사업배정업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 신】

○ 계약서에서 지정한 착수기일까지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제1항 1호에 의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 것이며,

○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자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업체)에 대하여도 제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5. 물품매각 계약 파기에 따른 질의

【질 의】

질의 사항은 기술공모에 의해 계약된 사업(설계, 시공 일괄입찰)에서 설계변경(공사비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1. 기초파일공사와 관련하여
   1) 당초 실시설계도서의 기초 강관파일 규격(406.4mm, 7T)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규격을 406.4mm, 9T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2) 실시설계도서 작성(지반조사)시 해당 사업부지가 지장물(농작물 재배)에 의해 해당 사업부지 인근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 강관파일의 길이를 산정하여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였으나
   3) 공사 착수 후 해당 사업부지에서 실시한 지반조사 결과 및 실제길이가 실시설계도서 작성시의 수량보다 증가하게 된 상황에서
2. 이러한 경우, 규격 및 수량(길이)의 증감에 대한 설계변경(공사비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회 신】

○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2호에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경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처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6. 시설공사 연대보증사의 책임한계 관련 질의

【질 의】

○ 2003년 9월에 착공하여 2004년 9월에 준공된 공사건과 관련하여 2005년 4월에 발주처에서 위 공사건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던 중 환경보전비항목과 안전관리비항목내역과 관련하여 환수조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발주처는 시공업체에게 환수명령을 내리려했으나 부도 등으로 인해 시공사에게 환수할 수 없어 연대보증사에게 환수조치를 내리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대보증사가 이에 대해 책임을 다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 당사는 연대보증을 했지만 계약서 및 내역서는 본적도 없고, 시공사가 알아서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받아갔고, 환경보전비 및 안전관리비 항목은 기성금 받을때 발주처와 시공사에서 다알아서하고, 연대보증사는 도장조차도 그 내역서에 찍지 않는데 이제와서 부도 등으로 시공업체에게 받을 수 없다고 연대보증사가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회 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에 따라 시설공사의 연대보증인은 당해공사 시공상의 보증의무(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말하는 바,

○ 공사대금 전부를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았다면 연대보증인이 대금 지급부분까지 이를 보증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7. 입찰자격 기준 관련 질의

【질 의】

○ 입찰자격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코져 합니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공사에서 국가계약법령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지역사업자 참가기준은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국가계약관계법령). 지역경쟁입찰의 목적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각 업체들의 발전을 꾀한다고 사료됩니다. 당사는 사업개시 후 3년정도(현재까지) ○○관할구역에 영업소를 소재하여(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명기됨) 사업을 하고있고, 그에 관련된 모든 각종 세금류등은 ○○시에 납부하고 있으나, 얼마전 입찰공고의 제한경쟁입찰에서 기초금액이 4000여만원의 시설공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의 50%이상이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주소)해야한다는 사항으로 인하여 자격기준에 미달한다고 합니다.

○ 참고로 예를 들면, 대기업 K건설의 현 영업소재지는 ○○으로 되어있으면, 등기상의 임원들의 50%이상이 ○○에 거주해야 합니까?

1. 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의 50%이상이 관내에 거주해야한다는 것의 해석이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관계법령에 타당한지요?
2. 임원의 50%이상 영업소재지내 거주라는 제한은 어디를 근거로 하는지요?

【회 신】

○ 지역제한에서 지역업체 기준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78호 2005. 4. 13)」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발주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시 ·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라고 지역사업자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지역사업자 기준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의 50% 이상이 관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해야 한다는 제한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시공실적증명서 실정인정 기준 관련 질의

【질 의】

○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161호 2005.2.3 제2조 제1항 제6호 별지6=전문공사 20억원미만 1.5억원이상)에 의한 시공경험(실적)평가방법 중 입찰공고일이 예를들면 2005년 4월 29일이라면,

1) 최근 10년간 실적인정기준 = (몇년 몇월부터 몇년 몇월입니까?)

2)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준 = 시공경험실적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협회에서는 시공실적증명확인서를 2003년까지만 발급이 되고 2004년 시공실적확인은 아직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10년간 또는 최근 3년간의 기간내에 준공이 완료된 2004년 시공실적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확인받아 실적증명서를 제출해도 실적으로 평가가 되는지요?

【회 신】

○ 행정자치부 예규 제161호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최근 3년간 업종별 누계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관련협회에 1회계연도 단위로 실적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평가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에도 시공실적에 대한 업종 및 실적

인정기간, 누계실적의 금액단위는 관련협회에서 발하는 실적증명서와 동일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준은 현재까지 관련협회에서 2004년도 실적은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1, 2002, 2003년도분 실적만 인정실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9. 입찰서 제출기간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질의

【질 의】

○ 본군에서 실시한 시설공사 전자입찰건에 대하여 1순위로 낙찰된 업체가 입찰서 제출기간중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직 1, 2순위 모두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공사입찰현황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05. 4. 11(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05. 4. 19(18:00)
- 개찰일시 : 2005. 4. 20(10:00)

○ 행정처분현황

- 업 체 명 : ○○건설 주식회사
- 위반내용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경력임원)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 처분권자 : △△도지사
- 처분일자 : 2005. 4. 16
- 영업정기기간 : 3개월(2005. 4. 19 - 2005. 7. 18)

질문 1) 1순위로 낙찰된 업체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질문 2)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61호) 제7조에의거 1순

위 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제외)하고, 2순위 업체가 적격심사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최종낙찰자로 선정하여도 무방한지?

질문 3) 1순위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경상북도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본공사건에 대하여 행정가처분 신청을 청구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 신】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 · 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한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귀 질의 경우 법원의 행정처분효력정지 결정이전까지는 영업정지처분 효력이 유효하므로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10.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상의 하도급업체 변경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제2조(평가기준) 3항 9의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선정한 하도급업체가 면허조건은 적합하나 공사시공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정한 하도급업체에 공사포기각서(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받고 타 업체로 변경하고자 할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 신】

○ 하도급 관리계획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적격심사 분야의 일부분으로서 하도급 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의하여 원도급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해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참여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관련 질의

【질 의】

○ 가격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 예정가격서를 작성하였으며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으며 가격협상을 할려고 합니다.

– 조달청공고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평균가격은 예정가격의 95%로 되어있는데 행자부기준은 몇%까지 협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절차를 살펴보면, ①협상기준 및 절차 작성 공고 ②제안서 제출 ③심사(심사위원회) ④우선 협상대상자(적격자) 선정 ⑤협상기준 및 가격작성 ⑥협상(가격협상, 조건협상후 가격협상, 조건동의 및 가격입찰)의 순으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 경우 가격에 대한 결정은⑥에서 협상을 통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용역의 가격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나 지식기반사업의 경우 추정가격(예정가격) 60%까지도 하한율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는 가능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가격을 결정하되 용역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관련 질의

【질 의】

○ 분담이행방식으로서 토목+조경공사의 3년간 실적평가(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초금액 33억원(조경 22억원, 토목 11억원)으로서 추정가격 30억원(A사 조경 20억원, B사 토목 10억원)인 일반공사(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실적평가
– 3년실적 : A사 조경 80억원, B사 토목 10억원

o 평가대상 업종별 평가비율 산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 A사 조경 : 22억/33억 = 66.67%(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①
– B사 토목 : 11억/33억 = 33.33% ····· ②

o 업종별 평가
– 조경 : 30억원(추정가격) × ①(업종별 평가비율) = 2,001,000,000원

o 80억원(조경실적) ÷ 2,001,000,000원 × 100% = 399.8%

o 399.9% = 15점(200%이상은 A등급으로서 15점)
∴ 15점 × ① = 10.0005점 ····· ③
– 토목 : 30억원(추정가격) × ②(업종별 평가비율) = 999,000,000원

o 10억원(조경실적) ÷ 999,000,000원 × 100% = 100.1%

o 100.1% = 11점(100%이상은 C등급으로서 11점)
∴ 11점 × ② = 3.663점 = 3.663점 ····· ④

따라서 실적점수는 ③ + ④ = 13.66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⑤

질문의 내용은 계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처리 문제입니다.

Case 1 : 최종단계에서만 반올림

③ + ④ = 10.0005 + 3.6663 = 13.6668 => 13.67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Case 2 : 업종별 점수계산시 반올림후 최종단계에서만 다시 반올림

③ + ④ = 10.00 + 3.67 = 13.67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해당 Sample은 점수결과가 같으나 처리방법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실적계수로 평가와 실적비율로 평가시 위의 소수점처리 방법이 같은 것 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것 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 신】

○ 소숫점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숫점 처리방법〉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 소숫점 세째자리에서 절사함
2. 하도급할 총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
   - 백분율 계산후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3. 경영상태평가시 평가요소별 해당업체비율은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함. 다만, "총자산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 수치에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적용함
4. 입찰가격평가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 공동수급체 기술능력평가시 기술자 보유평가에 있어서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6.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숫점 셋째자리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

○ 귀 질의 경우 위 소숫점 처리방법 6호 항목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에 해당됩니다.

13. 야간작업시 할증 관련 질의

【질 의】

○ 도로공사를 시공중 교통체증로 인하여 야간작업으로 전환한 공사에 대하여 야간작업 품 적용기준율이 무엇인지요?
또한 적용기준은 강제기준인지 협의사항인지요?

(시공사 의견) : 노무비-- 노임 할증 : 50%, 작업능률저하 : 25%
기계경비-- 재료비 및 경비 : 작업능률저하 25%
노무비(중기운전사) : 상기노무비와 동일

(발주처 의견) : 노무비-- 노임할증 : 50% 작업능률저하 : 적용안함
기계경비-- 재료비 및 경비 : 작업능률저하 : 적용안함
노무비(중기운전사) : 적용안함

【회 신】

○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없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물품수의 계약 관련 질의

【질 의】

○ 우리소에서 발주하여 조달 구입한(상수도직관) 제품에 대하여 부속 자재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우리소에서 상수도배수관포설공사로 인하여 hi-3p직관을 조달구입 함.(상기직관은 특허품임. 타사에서 제조판매를 못함.)
2. 직관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3자단가로 조달 가능함.
3. 부속자재에 대하여는 조달품목에 등록 되어있지 않음.
4. 이런 경우 부속자재에 대하여 본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본사 측에서는 인천에 본사와 계약한 대리점이 있다고 대리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는데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 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 사목에 의한 수의계약은 당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서는 제공할 수 없는 제품생산 등에 있어 품질 · 기능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대리점이 본사와는 별도의 사업자에 해당된다면 동규정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취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15.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의 처리방법 관련 질의

【질 의】

○ 물품 구매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1순위 낙찰업체가 공고상에 명시된 일자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때

질의 1) 계약포기서를 제출 할 경우

- 부정당업체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입찰보증금 귀속이 가능한지와 회수 방법은?

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입찰 및 재공고를 부쳐야 하는지 ?

– 아니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8조에의거 2순위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 제6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토록하고 있는바, 이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자부 예규 제160호)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가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해당된다면 차순위자순으로 심사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최저가 입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 할 것임.

16. 야간경관조명 수의계약 가능유무 질의

【질 의】

○ 경관조명설치 공사에서 설계의도의 정확한 시공을 반영시키고자 지자체에서 당선 공모작품을 수의계약 하여 실시설계권 및 시공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 신】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 설계,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하는 경우에도 설계업자와 시공업자는 따로 공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물품 낙찰무효 관련 질의

【질 의】

○ 물품구매 전자공개입찰을 하여 개찰결과 조달청의 낙찰예정자 등록자료상에는 2005년 5.17일 현재 해당업체는 정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확인해본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 및 대표자는 같으나 상호명 및 사업장 주소가 상이합니다. 이럴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규칙제44조제1항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가 한 입찰로 보아야 합니까?

○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및 주민번호, 대표자명이 같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됩니까?

【회 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 제6의2호의 규정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 · 허가 또는 등록 내용

○ 따라서 상호를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않고 입찰한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는것입니다.

18. 물품매각 계약 파기에 따른 질의

【질 의】

○ 당사는 ○○도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2개사(A:B=51:49) 공동도급으로 계약체결하여 수행중 B사의 부도발생으로 공사수행이 곤란하여 B사의 공사포기각서를 받아 ○○도청에 접수하였습니다.

공사내용 : ○○하천 개수공사(56억)

입찰참가자격 : 토목 면허를 보유하고 지역업체와 반드시 49% 공동도급해야만 함(공동이행방식)

문제 : 부도난 B업체가 지역업체임

1)당사주장 : 시평액,실적,면허등 수행능력이 충분한 당사(A)가 남은 물량 전체를 재계약할수 있다.

2)발주처주장 : 당초 입찰공고 내용 취지가 해당 지역사를 보호하기 위해 49%의무 협정을 요구했었음으로 지역사가 부도났으면 남아있는 대표사가 임의로 지역사를 선정해 49% 협정을 해서 재계약해야 한다.

1)번과 2)번중 어떤 주장이 옳은지?

【회 신】

○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이행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구성원을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처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9. 경지정리사업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시에서는 경지정리사업 예산 4,674백만원(도급액 2,718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 97%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 본 사업에 대하여 당초 인가시에는 경지정리사업(101ha)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구간 중앙에 소하천인 ○○천(2.2km), ○○천(2.0km)이 관통하고 있으며 본 하천의 정비는 당초 인가된 설계내역서상에는 토공작업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토공작업으로 하천형상을 유지하면 장마철 하천제방 유실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어 ○○도에 하천정비(구조물 : 호안블럭설치)사업비 지원요구하여 현재 별도의 사업비로 1,711백만원(도비 : 50%, 시비 : 50%)을 예산편성 중에 있음.

[질의내용]

○ 별도로 편성된 소하천공사비 1,711백만원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으로 시행하는 소하천제방의 유실등 하자로 인한 문제 등을 감안하여 당초 도급회사와 설계변경하여 시행가능한지 여부

○ 아니면 별도 사업비로 확보된 사항이므로 별도 설계하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공사의 설계변경은 일반적으로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설계서의 변경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와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 등으로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인 바,

○ 귀 질의 경우 “경리정리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이 별도로 추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1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사항은 현장상태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 할것임

20. 환경인증 우수업체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 작용 관련 질의

[질의요지]

○ 각 지자체별로 수립, 운영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환경인증 우수업체에 대한 배점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인증업의 범위에 ISO 14000(환경경영시스템) 인증도 포함이 되는지요?

【회 신】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일반용역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기준이 없고「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자부 예규 제160호)」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별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환경인증업의 범위에 ISO 14000(환경경영시스템) 인증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 토막상식

방카슈랑스(Bankassurance)

방크(은행)와 아슈랑스(보험)의 합성어. 보험회사가 은행지점을 보험상품으로 판매대리점으로 이용, 은행원이 직접 보험상품을 파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은행은 보험회사의 상품을 팔아 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다. 최대 장점은 고객들이 은행에서 은행-보험상품의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